

##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 教育監
2. 件 名 : 大田直轄市 學生 教育院 設置 및 運營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 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 參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 年 7 月 日

文教·社會 委員會

專門委員 金 鎮



大田 學生 教育院 設置 及 運營 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2 . 7 .

文教・社會 委員會  
專 門 委 員

## 目 次

1. 提 案 理 由 ----- 2
2. 主 要 骨 子 ----- 2
3. 檢 討 意 見 ----- 3

## 大田 學生 教育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 制定案은 1992年 7月 9日 大田直轄市 教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年 7月 13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 案 理 由

學生의 精神教育과 心身修練으로 學校教育課程을 補完함으로써 進取的이고 未來志向的인 人間을 教育하기 위하여 大田學生教育院(以下 “教育院”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이에 따른 諸般事項을 定하려는 것임 .

### 2. 主 要 骨 子

- 가. 設置目的을 定함(案 第 1條 )
- 나. 位置를 忠淸南道 公州郡 反浦面 凤谷里 山 61-2번지로 定함(案 第2條)
- 다. 教育院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定함 (案 第 3條 )
  - 1) 學生修練
  - 2) 教育監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修練과 研修
- 라. 組織 및 定員에 關한 事項을 定함 (案 第 4條 및 第5條)
  - 1) 教育院에 教育院長을 두되 教育院長은 奬學官으로 보하도록 함.
  - 2) 教育院長 밑에 1課 3部를 둠
  - 3) 教育院의 事務分掌과 定員에 關한 事項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함.

- 마. 教育院의 施設을 利用하는 者에 대하여는 限度額을 定하여 修練經費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함. (案 第 7條)
- 바. 教育院에 圖書室, 寄宿舍等의 附屬施設을 設置, 運營 할 수 있도록 함. (案 第 8條 )

### 3. 檢討意見

- 本 條例案은 大田 學生 教育院을 設置 運營하여 學生들의 精神 教育과 心身修練의 場으로 活用코자 하는 것으로써 地方教育自治에 關한 法律 第41條에 根據하고 있음.
-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으로는

첫째, 本 學生 教育院의 設置目的, 位置等을 案 第1,2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位置를 忠淸南道 公州郡 反浦面으로하여 大田 直轄市 外 地域으로 하였음은 敷地 確保에 따른 豫算 節減 效果와 周邊 景觀等을 考慮한 것으로써 學生들의 教育效果 增大 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됨.

둘째, 本 學生 教育院의 所管 業務로써 學生修練과 其他 教育監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教育等을 擔當하게 되는데 주로 幹部 學生에 대한 指導力 培養 教育, 學敎生活 不適應 學生에 대한 自我發見教育, 卒業班 學生에 대한 進路教育, 其他 基本 生活 習慣等을 指導하므로써 學生 本然의 姿勢를 確立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됨.

셋째, 本 學生教育院의 組織과 定員을 定하려는 것으로써 案 第 4條와 5條에 規定하고 있는 바,

院長은 奬學官으로 보하며 院長 傘下에 庶務課, 學生部, 研修部 및 教導部等 一課 3部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의 構成에 必要한 公務員의 職級과 定員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委任하고 있음.

그러나 本 教育院의 定員에 대하여는 教育計劃, 收容能力, 他市·道 教育院의 定員等을 綿密히 檢討한 후, 適定 人員을 配置하므로써 豫算을 浪費하는 事例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思料됨.

넷째, 本 學生 教育院의 財政 運營에 관한 事項은 案 第6條와 7條에 規定하고 있는 바,

本 教育院에 所要되는 諸 經費는 大田直轄市 教育費 特別會計 및 修練生 委託機關의 負擔金을 充當토록 하였으며, 利用하는 學生들에게 修練에 따른 實 經費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하고 그 限度額을 規定하고 있음.

실제로 本 條例로 規定한 修練生의 修練經費는 4박5日 基準으로 約22,600원이 算出되어 教育 效果等과 비춰볼 때 큰 無理는 아닌 것으로思料됨.

다만 좀 더 많은 學生들이 아무 負擔없이 本 教育院을 利用하기 위하여는 無料 教育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 바, 年次的으로 基金 造成等의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으로思料됨.

以上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條例案은 學校 教育 過程에서 不足한 部分에 대하여 共同 生活의 經驗等 그 補完 教育을 實施하므로써 進取의이고 未來 志向의

人間의 育成이라는 目的아래 設立코자 하는 大田 學生 教育院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려는 것인 바, 92年

1月 11日 本 教育院 設置에 따른 教育部 承認 等 諸般 法的 事前 節次를 得한 事項으로써 별다른 問題는 없을 것으로 思料됨.